|  |  |  |  |
| --- | --- | --- | --- |
| (개발/납품)표준계약서 | | | 계약번호 : OP-DTS-계약-2311-03 |
| 계  약  자 | 갑 | ○ 회 사 : (주)온품  ○ 사업자등록번호 : 206-87-06603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9길13  ○ 대 표 자 : 김 유혁(전화번호 : 02-2163-5200) | |
| 을 | ○ 성 명 : 김 지 훈 (전화번호 : 010-9071-7218)  ○ 생년월일 : 1976.12.20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 아파트 (상세주소) | |
| 계  약  내  용 | 계 약 명 |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웹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 |
| 개발/납품내용 | LX플랫폼 고도화 사업 3D 기능고도화 분야 및 아키텍쳐 개발환경 개발 및 기획 | |
| 계 약 금 액 | **일금삼천육백만원 (₩36,000,000\_3.3% 세전)** | |
| 지체상금율 |  | |
| 계약기간 | 2023년 11월 10일 ~ 2024년 03월 10일까지( 4개월 )  상호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 | |
| 납품(시설)장소 | 온품 본사 출퇴근(주1회) 및 발주처 협의를 위한 운영환경(전주) 출퇴근(필요시) | |
| 납품기한 | 2024.03.10 | |
| 계약특수조건 | 비밀유지 |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갑”과 “을” 쌍방은 제3자에게 계약상대방의 서면 허가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
| 계약의 해지 | “갑”의 대금지금에 대한 불성실 이행 및 “을”의 개발 과업에 대한 불성실 이행이 판단되면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
| 대금지급 | 1. 지급 방식  : \ 9,000,000 (월 지급 방식) \* 4 회  2. 지급 일정  : 매월25일 지급 | |
| 기타 특수조건 | 1. 발주자 수정 요청으로 발생하는 개발지연은 상호 협의 한다.  2. 소스 이관 및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지원을 한다.  3. 온품 본사 출퇴근(주1회) 및 발주처 협의를 위한 운영환경(전주) 출퇴근(필요시) | |
| (주)온품과 김지훈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첨부 자료: 1. 계약일반조건  2. 신분증 & 통장사본  2023. 11. 10  (주)온품 대표이사 김 유 혁 (인)  성 명 김 지 훈 (인) | | | |

**계약 일반 조건**

1. **총칙**

###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결과물(제4조 제2항에서 정의함)에 대한 제작을 의뢰하고 “을”이 “갑”에게 결과물을 납품함에 있어서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계약의 체결 및 효력)

1.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계약 체결일 전에 이루어진 일체의 합의는 본 계약으로 대체되며 본 계약이 그에 우선합니다.
3.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 개월 입니다. 단, 계약 기간 내에 제4조(업무의 내역)에 명시된 업무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갑”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계약기간은 업무가 완료되는 날까지 연장됩니다.

1. **용역계약**

### (업무의 내역)

1. “갑”과 “을”이 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을”은 관련 기술과 지식을 제공해야 하고, “갑”은 업무 범위를 신속▪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갑”과 “을"은 공동업무와 각자 분담해야 하는 업무가 구별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업무에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 내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업무 개요
   1. LX플랫폼 고도화 사업 3D 기능고도화 분야 및 아키텍쳐 개발환경 분야 개발 및 기획
4. 업무 범위
   1. 개발(프론트엔드/백엔드) 전반
      1. 디지털트윈 플랫폼 개발
      2. web 개발
      3. 구현 기술 개발
   2. 이 외 업무 진행 간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

3. “을”은 업무 진행에 필요한 소스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상용 소스, 오픈 소스 등 별도 라이센스 정책이 있는 소스를 구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갑”에게 사전 설명 및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갑”에게 제 9조의 지식재산권 양도가 불가한 경우 이는 “을”의 귀책으로 합니다. “을”은 결과물(“갑”이 제공한 부분을 제외함)이 제3자의 특허,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진술 및 보증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제3자로부터 “갑”에게 소가 제기되는 경우 “을”이 “을”의 비용으로 이를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소통의무)

1. “갑”과 “을”은 성공적인 업무의 진행을 위해 상호 원활히 소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1일 이내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2. “갑”은 “을”과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1. 업무 개시를 위한 시작 시점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2. “을”은 “갑”에게 주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업무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전달합니다.
   3. 오프라인 회의는 “갑”의 소재지 또는 상호 합의된 별도의 지역에서 진행합니다.

### (금지행위)

* + - 1. “갑”은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행위
2. 결과물을 “을”에게 반품하는 행위
3.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지적 재산권 등)

1.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을 “갑”에게 양도합니다.
2. 지적 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갑”과 “을”의 의사표시는 14조(지급 조건)의 차수별 대금 수령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지식재산권의 양도 없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계약 대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의 변경)

1. “갑”과 “을”이 계약 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면, 당사자가 일방적인 계약변경을 통보하면서 일정 기한을 정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동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본 항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계약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 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2. “갑”은 “을”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대금지급**

### (지급 조건)

1. “갑”은 아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 은행 이름:
* 예금주:
* 계좌번호:

1.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기재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급 방식: \ 9,000,000 (월 지급액) \* 4회
* 지급 총액: \ 36,000,000
* 지급 일정: 매 월 25일 지급

**제4장 기타**

### (계약의 종료)

“을”이 전달한 최종 결과물에 대해 “갑”이 검수를 마치고 대금을 지급한 때 계약이 종료됩니다.

### (해제 또는 해지)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6. “갑”이 각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을”이 7일의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갑”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7.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8.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7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10.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을”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3. “갑” 또는 “을”이 사전 양해 없이 3영업일 이상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응답이 없는 경우
14. “갑”과 “을”은 상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최장 5영업일 이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5. 상기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6.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7. “갑” 또는 “을”이 계약체결 후 업무 착수 전 본조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계약 대금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본조의 사유로 또는 업무 착수 이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9조(손해배상)에 따릅니다.

### (손해배상)

1. “갑”과 “을”은 제4조(업무의 내역)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업무 지연과 불성실에 책임져야 합니다.
2. “을”은 업무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과물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제6조(검수)에 따라 검수를 완료한 결과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갑”이 부담합니다. 단,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나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을”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을”이 “갑”과의 협의에 따라 단계별로 제작한 결과물이 “갑”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제작되어 재업무 등이 불가피한 경우 향후 소요될 비용은 귀책사유 있는 자의 부담으로 하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합니다.

### (통지)

1.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본 계약서 말미에 기재된 주소 및 번호로 인편, 이메일, 등기우편에 의하여 전달합니다.
2. 모든 통지는 인편에 의한 경우 전달일에, 이메일 전송에 의한 경우 송신일에, 등기우편에 의한 경우 발송 후 3영업일 후에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들은 본 조의 통지처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처 변경의 고지가 없는 경우 변경 전의 통지처로 통지된 사항은 유효하게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면책)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분쟁의 해결)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결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끝.

**계약이행각서**

계약번호 : OP-DTS-계약-2311-03

계 약 명 :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개발 프리랜서 계약

계약기간 : 2023년 11월 10일 ~ 2024년 03 월 10 일

계약금액 : 일금삼천육백만원정 \36,000,000 (3.3%세전)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김지훈은 계약기간 내 모든 업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디지털트윈 플랫폼 개발, 디지털융합 본부 내 다수의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을 진행 하며,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한 개발(납품)의 지연으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거래 법에 준하여 배상과 보상을 할 것이고 그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개발 중도 포기 시 계약금의 10%를 배상한다.

2023. 11. 10

**성 명 김 지 훈 (인)**

첨부 ; 신분증, 통장사본